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연수·박용규*

산업안전보건교육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9. 2. 접수 / 2014. 10. 16. 수정 / 2014. 10. 21. 채택)

A Study on the Criteria for Appointment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Yeonsoo Lee · Yongkyu Park**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Institute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Received September 2, 2014 / Revised October 16, 2014 / Accepted October 21, 2014)

Abstract : The construction accidents which had been on the downward trend for the past decades have increased for five consecutive years since 2008. In order to let the increasing trend of construction accident slow growing or switching to decline, various efforts are required of all members in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government, employers, construction engineers, safety managers, construction workers, etc. Although the criteria for appointment of safety managers in construction site introduced in 1982 have contributed to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 as a forefront for the past 30 years, it has not been a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 safety manager's status and roles which have been required to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s. In associated with a newly introduced the criteria for appointment of health managers in construction site in the year 2015, the problems such as role, status, number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nd improved widely. In this study, we propose several improvement plans which will improve the current criteria for appointment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in construction sites.

Key Words : construction, safety manager, health manager, accidents, prevention

1. 서론

건설업 재해¹⁾는 1998년 재해율 0.91을 기록하며 1.0대 미만으로 진입한 이후 증가세와 감소세가 각각 5년여 간 반복한 후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여 이후 5년 연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사망재해자는 다소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2009년 5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정체 상태였으나 재해자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013년에는 약 45.2%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증가 추세인 건설재해를 둔화시키거나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 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개선과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 강화, 근로자는 이러한 정책과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1982년 도입한 안전관리자 제도²⁾는 30여 년간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의 첩경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형 건설공사 또는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는 경륜이 많은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원증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여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가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 Corresponding Author : Yong-kyu Park, Tel : +82-52-703-0852, E-mail : solopark1@naver.com

Department of Safety Resear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400, Jongga-ro, Jung-gu, Ulsan 681-230, Korea

이러한 가운데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과 연계하여 안전관리자 역할, 선임인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사용비율³⁾ 증가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규정을 개선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건설업 재해수준 비교

2.1 건설업 재해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의 재해수준 비교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 전체 재해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공사(건축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재해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2013년 기준 약 5.4배 정도의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전체 재해율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의 재해율 격차는 2001년 2.8배 수준에서 2011년 7.2배 수준까지 벌어졌다가 2013년 5.4배 수준으로 좁혀졌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이후 건설업 전체 재해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공사의 재해 수준은 최근 2년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리를 통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의 재해수준도 감소세가 둔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간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운영에 관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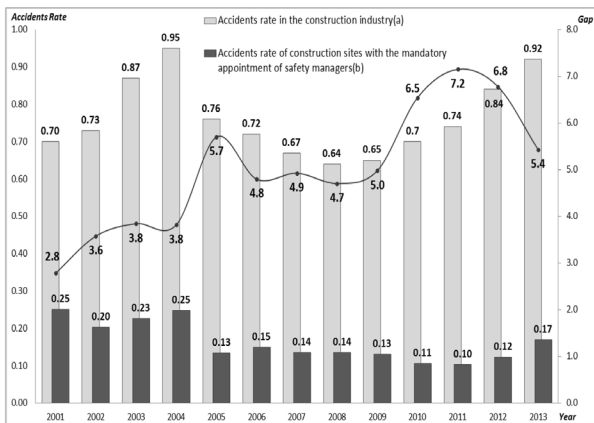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with industrial accidents rate between the whol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construction sites with mandatory appointment of safety manager.

2.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와 비선임대상 공사 재해수준 비교

Fig. 2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으로 변경(2000.8.5)된 이후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과 이상 건설공사의 재해율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와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공사간 재해율 수준을 비교하면 2013년 기준 9.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격차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년간 격차가 줄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공사의 재해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 재해율 수준이 정체상태에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해감소를 위한 기존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효과를 거두었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담인력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다.

3.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방안

3.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력 총량제 도입방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규정된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로 규정된 인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금액(또는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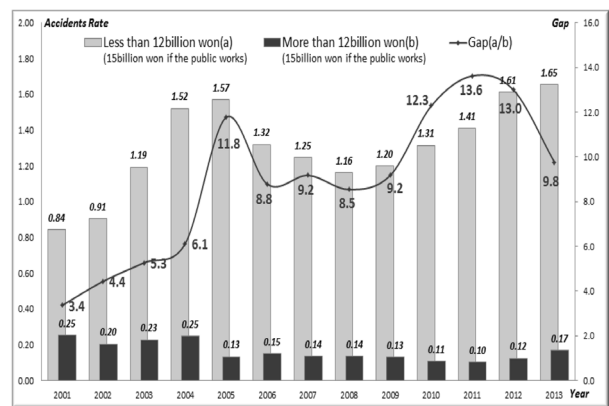


Fig. 2. Comparison with industrial accidents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the construction cost of 12 billion won (building construction, 15 billion won if the public works).

건설공사에서 공사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공을 중심으로 공사관리를 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존 설계감리, 책임감리, 시공감리 등)의 배치는 ‘건설기술진흥법(기존 건설기술관리법)⁴⁾’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과 공사관리를 중심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을 비교 검토하였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는 ‘시공부분’의 인력배치 기준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사’의 배치기준을 같이 비교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건축분야’ 투입인원 산정기준중 ‘시공단계’만 적용하였으며 보정계수는 ‘보통공정(1.0)’, 공사난이도 중 ‘골조공사비중’은 중간값인 50%를 적용]은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사금액·공사기간·공사난이도·구조물공사비중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하여 투입인력 기준을 ‘인·일(man-day) 또는 인·월(man-month)’로 총량을 산출하여 공사기간내에서 소요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량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률이 70%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증원하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공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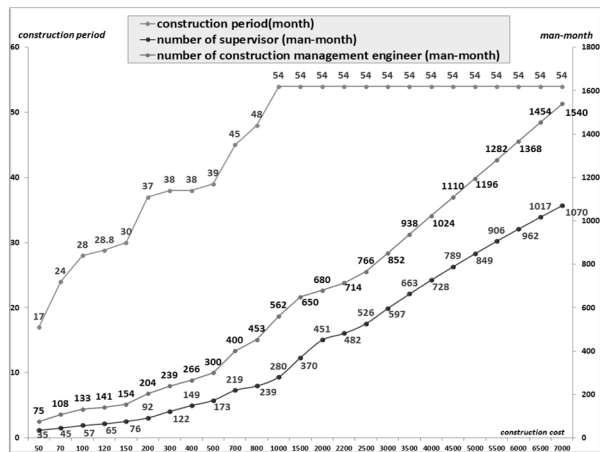


Fig. 3. Arrangement Standard for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and supervisor depending on the period and the cost of construction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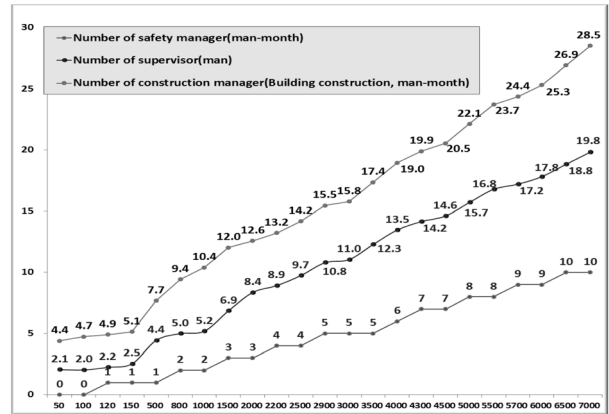


Fig. 4. Comparison with arrangement standard for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and supervisor depending on the cost of construction work.

부실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인력 배치기준은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인원을 단계적으로 정수로 증원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4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사 배치기준 포함)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비교하면 감리사 배치기준은 선형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어 공사금액 차이에 따른 배치인력이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경우 공사금액 구간(700억원) 별로 1명씩이 증가하도록 계단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어 경계구간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예를 들어 각각 1,490억원과 1,510억원의 공사금액 차이는 20억원에 불과하나 안전관리자는 공사기간동안 1명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인력기준을 총량기준을 적용하면 건설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고위험 공정진행 시기나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을 ‘인·월(man-month)’ 단위로 총인원 기준만 제시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여기에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등 공사종류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공사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에 부분적으로 공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진척율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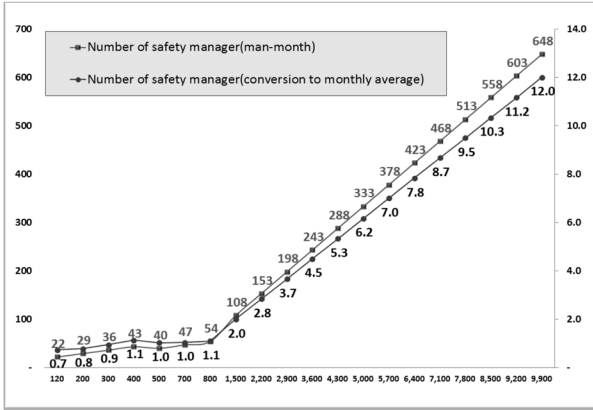


Fig. 5. Improvement suggestion for the appointment of safety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epending on the cost of construction work.

‘출역(예정)근로자수’를 반영하도록 보완하는 방안⁵⁾을 추가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종류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난이도에 따른 소요인력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통 난이도의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선임기준을 중심으로 공사 난이도에 따른 선임인력의 증·감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 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100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법정 안전관리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 미만인 경우 선임대상 인원중 1명을 줄여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선임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상한기준 도입방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금액(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사금액이 1조원이 넘는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대형 건설공사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20명이 넘어서 원도급 업체로서는 공사관리 인력과 버금가는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므로 인력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건설공사 초기나 준공에 가까운 기간, 장기계속공사로 공사기간이 5년~10년 이상인 경우, 기타 민원·천재지변·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율이 부진한 경우에도 법적의무에 제한되어 선임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러 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중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충족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현장내에서는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증원에 따라 제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내에서 인건비 사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교육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의 제약을 받게 되는 현상도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 조정하면 되나 공무원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비중 과다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사금액 1조원이상 초대형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인원의 제한을 들 수 있다.

2013년 기준 공사금액 1조원이상 건설공사는 8개소이며, 최고금액은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건설현장의 경우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자 총 인원이 53명에 달한다.

공사금액 1조원 규모의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은 상시 22명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나 공사기간이 3년~5년 정도로 감안하여 연간 소화하는 공사금액(기성액)은 약 2~3천억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기성(소화)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최소 소요인력은 6~7명 선으로 판단된다.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의무선임으로 그 간 제한적으로나마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였던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등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의 여유가 발생하고 동일한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업무중 중복부분이 발생하여 해당업무의 분담에 따른 업무 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공사의 진척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운용에 효율화를 기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기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상한기준을 두어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과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3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현장 의무선임 도입방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업 재해 감소세 전환과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수준 달성을 위하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인 경우 150억원 미만)의 재해 감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위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중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건설공사는 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중 고위험 공사로 분류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월 1회의 기술지도에 의존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고위험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고위험 건설공사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중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에도 제한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Table 1. The number of construction sites required to submit 'Harm and Hazard Prevention Plan' by law less than construction cost of 12 billion won

(Based on May 2014)

| Classification | Number of construction site | occupation percentage(%) |
|--|-----------------------------|--------------------------|
| Sum | 661 | 100.0 |
| Less than 20billion won | 43 | 6.5 |
| More than 20billion won ~Less than 30billion won | 72 | 10.9 |
| More than 30billion won ~Less than 40billion won | 73 | 11.0 |
| More than 40billion won ~Less than 50billion won | 88 | 13.3 |
| More than 50billion won ~Less than 60billion won | 67 | 10.1 |
| More than 60billion won ~Less than 70billion won | 71 | 10.8 |
| More than 70billion won ~Less than 80billion won | 44 | 6.7 |
| More than 80billion won ~Less than 90billion won | 63 | 9.5 |
| More than 90billion won ~Less than 100billion won | 66 | 10.0 |
| More than 100billion won ~Less than 110billion won | 30 | 4.5 |
| More than 110billion won ~Less than 120billion won | 44 | 6.7 |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가 제도화(2013.6.12) 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예방 대책 마련, 근로자 건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미흡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장(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확산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선진국 수준의 건설업 재해율 수준달성을 위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형 건설공사와 같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부여 시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므로 전담보다는 겸직 안전관리자 허용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안전·보건관리자 경력기준 도입방안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개선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정체상태에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 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경륜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재해예방 역할과 기여도 향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전문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위상을 높이고 축적된 경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자격기준⁶⁾과 더불어 경력기준⁷⁾ 도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와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존 감리사와 유사하며 발주자 업무 전반을 대행할 수 있음)'의 경우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난이도 등에 따른 인원기준과 더불어 경력, 학력, 자격, 교육 수준을 지수화하여 점수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인원기준과 병행하여 반영하도록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안전·보건관리자의 유해·위험요인 예측과 발굴 등 위험성평가와 예방관리능력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선임기준은 인원 및 자격으로만 되어 있어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경력이 짧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호하고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은 고임금 부담으로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잡한 공사, 고위험공정 수행 중 다양한 위험요인

에 대한 예측과 평가, 예방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경력이 많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요구되는데 불구하고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로 인하여 제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내에서 기존보다 많은 인원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현실로 인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공사 중 고위험 건설공사의 대형사고 예방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2009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중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자로서 건설안전 업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자로서 건설안전 업무경력 13년 이상인 자 포함) 1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준을 새롭게 제도화하였는데 이와같은 경력기준 반영제도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유지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전문성 향상 교육을 체계화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성 확대와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격, 경력, 법정의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건설기술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의 경력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4. 결론

건설업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시키기 위하여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력·경력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현행 선임기준 중 선임인원에 대하여는 선임인원의 총량제 도입(안)과 선임인원 상한기준 도입(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개선안은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연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선임인원 기준의 개선과 병행하여 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운용하는 중·대형 건설현장에서 전문인력 활용성 증대를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경력기준을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건설업 재해가 소·중·대규모 건설공사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소추세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중 고위험공사로 분류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여 중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건설업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두어 재래형 재해예방과 대형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건설재해 감소추세가 정체 상태에 있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하여는 그 동안 운영해온 제도의 틀을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2001~2013.
- 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4.
- 3) Public Notice of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Standard of Cost of Construction Management, No.2014-298.
- 4)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2014.
- 5) H. S. Ahn, K. J. Lee and E. J. Kim, “A Study 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struction Amounts and Numbers of Workers for Assessing the Required Numbers of Safety Managers”, A Repor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pp.122~125, 2013.
- 6) K. H. Lee, Y. K. Kim and W. S. Chung, “Regulation Compliance for Assigned Safety and Health”, A Repor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pp.155~164, 2004.
- 7) K. S. Son, K. O. Lee, W. M. Gal, H. S. Yang and J. N. Choi, “Improving Assignment and Qualification of Safety Manager at Construction Site”, A Repor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pp. 185~188, 2008.